

'11. 12. 16 (금) 15:00
제305회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 청 북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1년 11월 9일

2.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3. 회부일자 : 2011. 11. 15

4. 상정일자 : 2011. 12. 9 ~ 13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 12. 9일

- 의회사무처 · 감사관실 · 정책관리실 · 충북도립대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 12. 12일

- 공보관실 · 행정국 · 자치연수원 · 경제통상국 ·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 12. 13일

- 농정국 · 농업기술원 · 바이오밸리추진단 · 균형건설국 ·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운영전문위원 정헌성)

1.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년도	2012 계획안	2011 계 획	비교증감	%
계(16개기금)		187,607,508	135,673,801	52,133,708	38.4%
통합관리기금 (예산담당관실)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07	40,453,859	16,750,883	23,702,976	141.5%
지방채상환기금 (예산담당관실)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04	15,441	394,906	-379,465	-96.1%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과) - 지방자치법 제142조	'10	1,039,719	513,125	526,594	102.6%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00	787,570	652,853	371,235	56.9%
사회복지기금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01	7,200,635	2,325,798	21,335,094	917.3%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89	6,668,416	6,422,807	53,198	0.8%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 - 충청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06	6,645,390	6,274,155	526,594	8.4%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94	68,078,116	46,743,022	134,717	0.3%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농업정책과) -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에관한조례	'09	431,967	414,852	245,609	59.2%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과)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84	21,176,888	19,247,683	163,268	0.8%
청소년육성기금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79	274,291	221,093	17,115	7.7%
여성발전기금 (여성가족과) - 충청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	'98	1,832,133	1,668,865	1,929,205	115.6%
환경보전기금 (환경정책과)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07	11,293,392	13,903,745	-2,610,353	-18.8%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과)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05	15,566,265	14,364,302	4,874,837	33.9%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충북도립대학) - 충북도립대학운영에관한조례	'98	661,900	620,779	1,201,963	193.6%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농업기술원)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81	5,481,526	5,154,933	41,121	0.8%

-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11년도 보다 38.4%인 521억 3,370만 8천원이 증액된 1,876억 750만 8천원임.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수입

(단위 : 천원)

기금명	조 성 계 획									
	계	출연금	보조금	차 보 금	용 자 금 회 수	예 탁 금 상 환 금	예 치 금 회 수	예 수 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합 계	187,607,508	4,460,000	443,500	0	36,698,370	23,471,226	84,283,923	24,920,996	7,136,564	6,192,929
통합관리기	40,453,859	0	0	0	0	12,151,335	722,990	24,920,996	2,658,538	0
지방채상환기	15,441	0	0	0	0	0	14,306	0	1,135	0
체육진흥기	1,039,719	500,000	0	0	0	0	513,125	0	26,594	0
자활기	787,570	0	0	0	35,000	468,590	209,261	0	74,719	0
사회복지기	7,200,635	0	0	0	0	4,677,240	1,780,292	0	743,103	0
식품진흥기	6,668,416	0	0	0	1,260,010	1,333,334	3,464,619	0	356,335	254,118
투자진흥기	6,645,390	0	0	0	0	0	5,089,382	0	191,008	1,365,000
중소기업육성기	68,078,116	0	0	0	35,403,360	0	31,624,093	0	1,050,663	0
남북농업협력기	431,967	0	0	0	0	0	415,994	0	15,973	0
문화예술진흥기	21,176,888	1,500,000	443,500	0	0	0	18,516,151	0	717,237	0
청소년육성기	274,291	0	0	0	0	213,334	25,857	0	33,700	1,400
여성발전기	1,832,133	0	0	0	0	1,400,368	217,671	0	214,094	0
환경보전기	11,293,392	0	0	0	0	1,478,000	4,950,000	0	617,392	4,248,000
재난관리기	15,566,265	2,000,000	0	0	0	1,749,025	11,525,543	0	291,697	0
충북도립대학장학기	661,900	160,000	0	0	0	0	181,489	0	1,000	319,411
농촌전문인력양성기	5,481,526	300,000	0	0	0	0	5,033,150	0	143,376	5,000

(2) 지출

(단위 : 천원)

기금명	집행계획									
	계	고유 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 운영 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상환	예수금 상환	기타 지출
합계	187,607,508	11,358,048	15,300,000	0	122,550	50,587,664	80,648,045	15,283,319	14,297,882	10,000
통합관리기	40,453,859	0	0	0	0	25,000,000	1,155,977	0	14,297,882	0
지방채상환기	15,441	0	0	0	0	15,400	41	0	0	0
체육진흥기	1,039,719	0	0	0	0	513,125	526,594	0	0	0
자활기	787,570	185,000	300,000	0	0	0	302,570	0	0	0
사회복지기	7,200,635	377,000	0	0	0	4,671,300	2,152,335	0	0	0
식품진흥기	6,668,416	494,700	1,000,000	0	111,650	2,000,000	3,052,066	0	0	10,000
투자진흥기	6,645,390	3,648,000	0	0	0	0	2,997,390	0	0	0
중소기업육성기	68,078,116	0	14,000,000	0	0	0	38,794,797	15,283,319	0	0
남부농업협력기	431,967	0	0	0	0	410,000	21,967	0	0	0
문화예술진흥기	21,176,888	1,210,000	0	0	10,000	0	19,956,888	0	0	0
청소년육성기	274,291	0	0	0	0	213,334	60,957	0	0	0
여성발전기	1,832,133	165,000	0	0	900	1,400,368	265,865	0	0	0
환경보전기	11,293,392	2,898,000	0	0	0	3,600,000	4,795,392	0	0	0
재난관리기	15,566,265	1,700,000	0	0	0	12,764,137	1,102,128	0	0	0
충북도립대학장학기	661,900	546,972	0	0	0	0	114,928	0	0	0
농촌전문인력육성기	5,481,526	133,376	0	0	0	0	5,348,150	0	0	0

○ 16종 기금의 성질별 규모는

- 수입분야는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42억 8,392만 3천원(44.9%), 용자금회수 366억 9,837만원(19.6%), 예수금 249억 2,099만 6천원(13.3%), 예탁금 상환금 234억 7,122만 6천원(12.5%) 등으로 전체 수입의 90.3%를 차지하고 있음
- 지출분야는 금융기관예치금이 806억 4,804만 5천원(43.0%), 예탁금 505억 8,766만 4천원(27.0%)으로 전체 지출의 70%를 점유.

<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 >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편성액	%	구분	편성액	%
합계	187,607,508	100	합계	187,607,508	100
출연금	4,460,000	2.4	고유목적사업비	11,358,048	6.1
보조금	443,500	0.2	용자금	15,300,000	8.2
용자금회수	36,698,370	19.6	기본경비	122,550	0.1
예탁금상환금	23,471,226	12.5	예탁금	50,587,664	27.0
예치금회수	84,283,923	44.9	예치금	80,648,045	43.0
예수금	24,920,996	13.3	차입금원리금상환	15,283,319	8.1
이자수입	7,136,564	3.8	예수금원리금상환	14,297,882	7.6
기타수입	6,192,929	3.3	기타지출	10,000	0.0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이 일반회계 예탁 61.8%, 예수금 원리금상환 35.3%, 여유자금 예치 2.9%로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 ▶ 지방채상환기금 :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며, 2011년말 현재 우리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 잔액(원금)은 총 4,886억원 임에도 기금조성이 4,337만원에 불과함. 2008년 이후 기금조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우리도 지방채 상환계획과 연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 자활기금 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지원 5,000만원, 저소득

층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1억 800만원 등 신규추진 사업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사회복지기금**의 조성액대비 집행액이 과거 5년 평균 22.2%로 해마다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11년말 기금조성액대비 '12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이 1.96%에 불과하여 기금의 활용도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 **식품진흥기금**중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참가비 지원(66p)의 적정성과 시설개선용자금(69p)의 지원실적과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적립금이 없어 해마다 필요한 소요재원을 도비에서 전입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확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 5억원의 적립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적립시까지 활용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지역문화예술육성(103p) 10억 7,500만원, 문화예술활동사업비(103p) 1억 3,500만원의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전년대비 9.8%의 증가가 있었으나 '11년말 현재액 대비 '12년 사업비가 6.6%에 불과하여 활용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적립금 2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청소년육성기금**은 '09년 2억원 출연을 마지막으로 조성되지 않아 '12년에는 장학금지급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금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여성발전기금**중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금(122p) 1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환경보전기금**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7억 5,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전무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 **투자진흥기금**중 공유재산매각수입(145p) 13억 6,500만원과 분양·임대용 토지매입비(146p) 36억 3,500만원에 대하여는 대상지역,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여부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 **중소기업육성기금**중 벤처·지식산업 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자금

(154p) 140억원의 지원기준, 여유자금(155p) 388억원을 통합관리기금과 별도로 관리하는 사유와 민간인에 용자한 금액의 회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운용계획 미수립
-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농업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등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뤄지는 바, 과거 5년 평균을 보면 수입액의 1/3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 재난관리기금 중 하천노후시설물 긴급보수사업,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설치사업 내역과 충청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조 6,689억원의 7.0%(1,876억 750만 8천 원)를 점유하는 2012년도 16종의 기금은

- ▶ 지방채상환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의 경우 적립금액이 적어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진 관계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 등은 기금의 활용도가 낮아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없음에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71억원)의 경우 수입액(1,876억원)의 3.8%에 불과하여, 기금적립 대비 이자수입의 효과가 미약한 수준임
- ▶ 따라서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기금사업 중 일반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대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증식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별	2011년도 말 현재액 ^(a)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 말 현재액 ^{(d)=(a)+(b)-(c)}	증 감 ^{(e)=(d)-(a)}
		수입 ^(b)	지출 ^(c)		
합 계	185,209,493	79,852,359	56,371,799	208,690,053	23,480,560
통합관리기금	51,792,323	27,579,534	14,297,882	65,073,975	13,281,652
지방채상환기금	43,372	1,135	0	44,507	1,135
체육진흥기금	513,125	526,594	0	1,039,719	526,594
자활기금	1,915,031	109,719	485,000	1,539,750	-375,281
사회복지기금	19,281,056	743,103	377,000	19,647,159	366,103
식품진흥기금	9,614,619	1,870,463	1,616,350	9,868,732	254,113
투자진흥기금	5,089,382	1,556,008	3,648,000	2,997,390	-2,091,992
중소기업육성기금	31,624,093	36,454,023	29,283,319	38,794,797	7,170,704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415,994	15,973	0	431,967	15,973
문화예술진흥기금	18,516,151	2,660,737	1,220,000	19,956,888	1,440,737
청소년육성기금	865,857	35,100	0	900,957	35,100
여성발전기금	5,418,771	214,094	165,900	5,466,965	48,194
환경보전기금	16,032,000	4,865,392	2,898,000	17,999,392	1,967,392
재난관리기금	18,873,080	2,291,697	1,700,000	19,464,777	591,697
충북도립대학기금	181,489	480,411	546,972	114,928	-66,56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033,150	448,376	133,376	5,348,150	315,000

Ⅲ. 주요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V.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